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5. 8.

정무위원회

##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4. 11. 28.

민병덕의원 등 10인

나. 회부일자 : 2024. 11. 29.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 제422회 국회(임시회)

- 제2차 정무위원회(2025. 2. 19.)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 제427회 국회(임시회)

- 제1차 법안심사제2소위원회(2025. 7. 22.)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반영 폐기)

○ 제427회 국회(임시회)

- 제2차 정무위원회(2025. 7. 30.)

상정, 소위심사보고, 의결(대안반영 폐기)

##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민병덕의원)

현행법은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80세 이상의 저소득 참전유공자에게만 생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80세 미만의 참전유공자에게는 생계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생계지원금 지원의 연령 제한을 75세로 완화하여 저소득 참전유공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고령 참전유공자의 영예로운 노후를 보장하려는 것임.

또한, 참전유공자의 사망과 동시에 보훈지원이 단절되어 경제적 빈곤이 심화되는 배우자의 생계 유지를 위해 참전유공자 사망 시 생활이 어려운 배우자에게도 생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6조의3 등).

###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최 기 도)

□ 개정안은 현재 80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는 생계지원금 수급 자격을 75세 이상으로 완화하고,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에게 생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3 등).

(1) 생계지원금 수급 연령 제한을 75세로 완화

□ 현행법은 생계가 어려운 참전유공자에게 매월 생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80세 이상으로 가구 소득수준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이면서 부양능력 있는 부양의무자가 없는 참전유공자에게는 매월 10만원의 생계지원금이 지급되고 있음.

□ 그러나 생계지원금 수급 자격을 80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어, 생활고를 겪고 있는 80세 미만의 참전유공자가 생계지원금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 이에 개정안은 생계지원금 수급 자격 연령을 80세 이상에서 75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함으로써 생활고를 겪고 있는 참전유공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취지임.

□ 생계지원금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참전유공자에게 연령과 관계 없이 지원하는 것이 동 제도의 취지에 더욱 부합하는 방향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수급 연령 제한을 완화하려는 개정안의 내용은 타당한 것으로 보임.

□ 다만, 개정안에 따를 경우, 국가보훈부 추산에 의하면 연간 약 214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참전유공자와 동일하게 80세 이상이 생계지원금 지급 대상인 5·18민주유공자 및 특수임무유공자도 생계지원금 연령 제한 폐지를 요구하는 경우 재정 소요액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를 함께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음.

□ 국가보훈부는 현행 생계지원금 제도의 연령 요건이 저소득층 생계지원 정책의 효과를 제한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개정안에 동의하는 입장이나 재정 당국과의 협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음.

□ 반면, 기획재정부는 생계지원금은 고령으로 인해 노인 일자리 참여조차 어려운 저소득 참전유공자 등에 한해서만 지원 중인 수당이므로 수급 연령 제한 완화가 곤란하다는 입장임.

## (2) 참전유공자 배우자에게 생계지원금 지급

□ 현행 보훈 관계 법령은 생계가 어려운 보훈대상자에게 매월 수당

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보훈보상자 및 그 선순위 유족에게는 생활조정수당을, 5·18민주유공자·특수임무유공자 및 그 선순위 유족과 참전유공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게는 생계지원금을 지급함.

○ 생활조정수당은 가구 소득수준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이면서 부양능력 있는 부양의무자가 없는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및 그 선순위 유족에게 지급(매월 최소 24.2만원~최대 37만원)되는 수당임.

○ 생계지원금은 80세 이상으로 가구 소득수준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이면서 부양능력 있는 부양의무자가 없는 5·18민주유공자·특수임무유공자 본인 및 선순위 유족과 참전유공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게 지급(매월 10만원)되고 있음.

□ 그러나 현행법상 생계지원금 지급대상인 5·18민주유공자·특수임무유공자의 선순위 유족에게는 생계지원금이 지급되고 있는 반면, 참전유공자의 경우 본인에게만 생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참전유공자가 사망하는 경우 그 배우자의 경제적 어려움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 이에 개정안은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에게도 생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참전유공자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하려는 것임.

- 현행 생계지원금 지급 대상은 가구 소득수준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80세 이상의 참전유공자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역시 고령일 가능성이 크며, 참전유공자 사망 시 생계지원금 지급이 중단될 경우 배우자의 생계곤란이 심화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개정안은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임.
- 또한, 참전유공자와 마찬가지로 신체적 희생이 없는 무공보국수훈자의 경우 배우자에게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형평성 차원에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도 생계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볼 수 있겠음.
- 참고로 국가보훈부 추산에 의하면, 개정안에 따라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에게 생계지원금을 지급하게 되면, 연간 약 261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 국가보훈부는 참전유공자 배우자에게 생계지원금을 지급하여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하며, 생활조정수당, 생활지원금 등 저소득 보훈대상자 지원금의 경우 보훈가족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유족에게도 지급되고 있으므로 개정안에 동의하나, 국가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재정 당국과의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 반면, 기획재정부는 참전과 무관한 배우자에게까지 생계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여 보상하는 보훈보상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음.

#### 4. 대체토론 요지

없 음

####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 강민국위원)

- “위원회 대안” 마련으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함(대안반영폐기).

#### 6. 찬반토론 요지

없 음

#### 7. 심사결과

대안반영폐기